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12
----------	-------

발의연월일 : 2024. 1. 26.

발 의 자 : 백종헌 · 이종성 · 이현승
최춘식 · 박정하 · 권명호
김용관 · 박덕흠 · 이주환
정경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 업종(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과 달리 소독업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이 미비하여 소독업 양도 시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개설등록이 각각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소독업의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독업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소독업의 승계) ① 소독업자가 소독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장비 및 인력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3조의2(소독업의 승계) ① 소독업자가 소독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 · 장비 및 인력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u>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u> <u>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u> <u>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u> <u>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u> <u>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